

광주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525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3. 2.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0. 12. 9. 접수 제19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B은 2020. 11. 11.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에 전담 담양군 D 임야 중 1/5 지분을 32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30. 위 회사에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21. 1. 25.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9,195,12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B은 2020. 12.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B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서 2020. 12. 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별지

부동산

1. 전남 담양군 E 임야 4,051㎡
2. F 도로 476㎡. 끝.